

## ②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<u>시가인정액</u>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<u>시가인정액</u>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----- ----- <u>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</u>----- ----- <u>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</u>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----- -----.</p>